
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- 라. 上程日字 : 1998. 7. 30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產 業 課 長 徐 參 東)

가. 提 案 理 由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농민들이 폭넓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主 要 骨 子

-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사업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함(안 제3조).
- 마을단위 및 작목반의 연대보증인을 2인이상으로 하고 연대보증을 할수 없는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조항 완화함.
- 제12조 제1호와 제2호가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관련 조항 삭제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조례는 농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등 농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규정으로써
-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사업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고, 마을단위 및 작목반에게 융자할 경우 과도한 연대 보증 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됨.
- 다만, 마을단위 및 작목반에게 융자할 경우 여론수렴 절차등의 명백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의 여지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

- 질의) 마을단위 및 작목반의 연대보증인을 2인이상으로 할 경우 주민들의 공정한 여론수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조례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?
- 답변) 사전에 주민선체 회의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첨부토록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내부방침만으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함.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0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 23.

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
번호

10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3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농민들이 폭넓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농민들이 폭넓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완화 (안 제3조).

나. 마을단위 및 작목반의 연대보증인을 2인이상으로하고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 조항 완화(안 제7조제2항, 3항).

다. 제12조제1호와 제2호가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관련조항 삭제함.

□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

○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
○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('99. 6.23)결과→완화 및 삭제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본문중 “안정성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중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”을 “안정성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마을단위로 할 때에는 당해 마을개발위원 전원과 작목반의 경우에는 작목반원 전원”을 “마을단위로 신청시에는 개발위원 2인 이상, 작목반원으로 신청시에는 작목반원 2인 이상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

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	개
행	정
안	안
<p>제3조(용자대상사업) 용자대상사업</p> <p>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으로서 <u>안정성 있고 소득효과가</u> <u>큰 사업중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</u> 우선 선정한다.</p> <p>1.~3.(생략)</p>	<p>제3조(용자대상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 <u>안정성 있고 소득효과가 큰</u> <u>사업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용자금의 신청) ①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2명이 상의 연대보증서를 첨부하되 <u>마을</u> <u>단위로 할 때에는 당해 마을개발</u> <u>위원전원과 작목반의 경우에는</u> <u>작목반원 전원이 연대한 보증서를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 <u>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</u> <u>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용자금의 신청) 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마을단위로</u> <u>신청할 때에는 개발위원 2인이상,</u> <u>작목반의 경우에는 작목반원 2인</u> <u>이상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</u> <u>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</u> <u>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융자금의 반환)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목적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<u>저조할 때</u> 3. (생략) 	<p>제12조(융자금의 반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(삭제) 3. (현행과 같음)